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

# 2024년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

---

2024. 2.

# 2024년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

## <회의개요>

- 일 시: 2024. 2. 1.(목) 10:00~11:20
- 장 소: 마포구청 9층 중회의실
- 참석위원: 9명
  - 위원장: 김성우
  - 위 원: 구영신, 백은, 이용언, 전미선, 전성흥, 전정미, 정영란, 홍정연
  - 마포구 관계자: 새마포담당관, 새마포기획팀장, 담당자
- 안 건: 3건
  -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기준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식 결정

<참석자 소개 및 위촉장 전달식, 구청장 인사말 진행>

### □ 새마포기획팀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마포구 의정비 심의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문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선서문을 읽어보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민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가 선택될 경우, 공청회 주재자 역할도 맡아 주시게 됩니다.
- 위원장 선출에 앞서 임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임시위원장을 먼저 선출해야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동의를 있으시면 연장자 순에 따라 ○○○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데요. ○○○ 위원님 수락하시겠습니까?

□ ○○○ 위원

○ 네.

□ 새마포기획팀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 위원님께 임시위원장직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 임시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 위원입니다. 먼저 새마포기획팀장은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포기획팀장

○ 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임시위원장

○ 네. 그럼 바로 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후보로 1인이 추천될 경우, 참석위원님들의 동의와 함께 박수로 선출 확정하고, 2인 이상 추천될 경우, 거수하여 다수 득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에 위원님들 혹시 다른 방법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설명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 위원

-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 위원장님이 계속 위원장을 맡으시면 어떻습니까? 전에 경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시위원장

- 올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다면 팀장님이 부연설명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포기획팀장

- 네, 알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 네,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된 것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새마포기획팀장

-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마이크가 동시에 켜져 있을 경우에는 울림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하고 나서서 위원님들께서는 버튼을 바로 꺼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마이크 없이 해도 다 들리시죠?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 각계각층의 훌륭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그대로 수렴하고 마포구의 의정 활동비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잘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는 이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바로 회의 진행하는 게 어떤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바로 회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마포기획팀장님, 안건 설명해주세요.

## □ 새마포기획팀장

- 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마포구 구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의정비는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로서 오늘 심의하게 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22년 9월에 결정하였으나 작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회는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분 중 총 10명으로 구성해 오늘 정식으로 위촉되었고, 임기는 1년입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지급금액 기준과 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하는데요. 잠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을 얻으면 최종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결정금액은 구 홈페이지 공표 및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때 심의회가 통보한 금액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로 페이지 6,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변천과 페이지 12, 관련 법령도 심의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1차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정비 심의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주민의견 수렴방식 결정의 건 총 3건입니다. 이상 의정비 개요 및 심의회 역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역할과 안건을 한 번에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안건별 심의 때 제안 설명을 다시 한 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새마포기획팀장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장

- 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새마포기획팀장

- 그럼 위원장님,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건 1: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 □ 위원장

- 첫 번째 안건, 회의에 대한 공개 결정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새마포기획팀장

- 네, 그럼 제가 제안 설명 간단히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심의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의 비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심의회 위원명단, 회의록, 의정비 심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회의의 공개'는 회의를 방청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여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주시죠. 회의를 공개, 비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 □ ○○○ 위원

- 차이가 회의 내용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인가요?

### □ 새마포기획팀장

- 네, 맞습니다. 회의 내용은 저희가 회의록을 다 공개하게 되어있거든요. 다만, 이 자리에서 공개로 결정이 될 경우 주민분들이 배석해서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 ○○○ 의원

- 그럼 그분들이 질의응답이 가능한가요?

**□ 새마포기획팀장**

- 질의응답은 아닙니다.

**□ ○○○ 의원**

- 그럼 3분의 2 찬성했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여기 위원들만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 위원**

-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나요?

**□ 새마포기획팀장**

- 아뇨. 사실 1차 회의 같은 경우에는 결정된 게 없어 저희가 따로 안내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금액을 결정하고 의견 수렴 방식이 결정되면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진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2차 회의를 한 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그 때 방청을 하실 분들은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원**

- 회의 공개를 하게 되면, 방청객 발언권은 있나요?

**□ 새마포기획팀장**

- 회의 때 발언권은 없습니다.

**□ ○○○ 위원**

- 저희가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비공개로 하는데, 통상 비공개로 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 새마포기획팀장**

-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방청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을 다 지켜보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 ○○○ 위원**

- 어차피 회의록은 공개가 되는 건데,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된다면 저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비공개 회의를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견 있음)

□ 위원장

-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새마포담당관

- 거수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비공개를 원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6명 거수)

- 공개가 3분이니까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비공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건 2: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 위원장

- 2번째 안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입니다. 새마포기획팀장님께서 안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포기획팀장

- 우선 회의 내용상 앞서 설명 드린 사항과 일부 중복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2003년에 인상된 후 2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물가상승률의 50%를 반영하여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정활동비를 인상 하였습니다.



- 그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현재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기준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총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 후 3개월 이내인 3월 13일까지 금액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이 기준금액은 26년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마포구는 2022년 9월, 심의회를 통해 2023년 의정비를 월 375만5,700원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 중 의정활동비는 마포구를 포함한 기초의회 모두 월 1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또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결정시 고려사항은 회의자료 3페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입니다. 그 외 마포구 주민 수, 마포구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7페이지와 11페이지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금액이 결정되면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인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의견 수렴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 상정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설명과 회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에 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 의정활동비는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 □ 새마포기획팀장

-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다 내려왔고요. 지금 기초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만원, 광역 시도는 최대 50만원 안에서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 □ 위원장

- 회의자료를 보면 지금 각 구별로 의정비 등이 나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새마포기획팀장

- 7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자치구별 의정비 현황이 나와 있고요. 8페이지 보면 의정활동비 결정 시 고려사항인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9위고요. 의정비는 25개 구 중 22위입니다.

□ ○○○ 의원

- 이 기준이 지금 시행령 별표 5지요? 별표 6이 아니고.

□ 새마포기획팀장

- 별표6은 여비 규정입니다.

□ ○○○ 의원

- 네, 별표5에서 보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합쳤을 때 최대 월 150만원인데, 저희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110만원인 거죠?

□ 새마포기획팀장

- 네. 그 110만원의 경우 전국 기초 의회가 모두 동일합니다. 광역시도는 현재 150만원이고요. 20년 동안 계속 동일했거든요.

□ ○○○ 위원

- 그럼 붙임2에 나와있는 의정비 현황은...

□ 새마포기획팀장

- 그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의정비가 월정수당, 오늘 결정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월정수당 같은 경우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 다르고요. 의정활동비는 지금까지 다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 ○○○ 위원

- 월정수당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그냥 정해져 있나요?

□ 새마포기획팀장

- 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2022년 9월에 결정을 했고, 심의를 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결정할 때 보수인상률 범위 내로, 1.4%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서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고요.

## □ ○○○ 위원

- 인상률이 매우 저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강남, 서초보다 무조건 낮게 설정하는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 의정 활동은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최대치를 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데, 여지껏 너무 적은 의정비를 받았던 것에 대해 마포구 주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굳이 저희가 강남, 서초구보다 늘 낮은 금액을 책정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는 강남과 동일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 우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주시죠.

## □ ○○○ 위원

-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사실 구의원분들 마포구를 위해 굉장히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아직까지는 강남, 서초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절한 수준의 인상폭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강남이나 서초를 보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구청과 비교를 해서 만약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때 꽤 큰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절한 정도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 ○○○ 위원

-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 9위쯤 되네요. 그런데 의정비는 22위인데, 재정자립도와 의정비 지급하고 어느 정도 동일선에서 맞춰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강남이나 서초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수준이고, 마포는 30%대인데 너무 강남, 서초에 맞추다 보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든 여론조사든 우리 주민들도 다 보고 있고, 의견이 많을 텐데, 재정자립도 하고 의정비는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장

- 우리 ○○○ 위원님과 ○○○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 ○○○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5페이지 보면 조례 개정이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일정 지급 기준을 정하고 그 이후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반영한 다음 그 결과가 조례 개정으로 다시 또 그 아래로 될 수도 있나요?

□ 새마포기획팀장

- 공청회든 여론조사든 금액 범위가 나오면 2차 회의를 해서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그걸 조례에 명시하게 됩니다. 조례는 최종 결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원

- 명시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거죠?

□ ○○○ 위원

- 그럼 2차 회의가 최종적인 거나 마찬가지로네요.

□ ○○○ 위원

- 우리 마포는 언제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2022년 9월에 인상이 있었나요?

□ 새마포기획팀장

- 네, 그때 의정비 전체에 대한 심의를 했고요.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모든 기초 의회가 다 110만원으로 동일했고, 월정수당 부분이 몇 프로 인상을 할지 심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의정활동비는 수당 개념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월정수당은 기본급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여기서 구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새마포기획팀장

- 전체 다 해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의정비가 4507만원이었습니다.

□ ○○○ 위원

- 그럼 의정활동비는 지금까지진 기초의회가 다 동일했는데 앞으로는 다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 새마포기획팀장**

○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저희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요.

**□ ○○○ 위원**

○ 지금 결정된 데가 있나요?

**□ 새마포기획팀장**

○ 서울은 아직 최종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조금 빨리 한 데는 공청회 진행을 앞둔 곳도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 금액이 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1차 회의에서는 최고 금액으로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수렴해서 그 범위 안에서 다시 금액을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 거죠?

**□ 새마포기획팀장**

○ 최대금액은 40만원입니다.

**□ ○○○ 위원**

○ 지금 40만원이 최대 인상인데, 저희 구 의원들은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 새마포기획팀장**

○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의회가 20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고, 그건 시행령에 금액이 얼마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 ○○○ 위원**

○ 20년 동안 동결 상태에서, 457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 새마포기획팀장**

○ 4507만원입니다.

□ ○○○ 위원

- 죄송해요. 자료가 많아서. 최대금액이 지금 40만원인 안에 대해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와 비슷하게 받게 해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40만원이라는 거죠?

□ 새마포기획팀장

- 네, 그런데 지금 강남도 40만원 인상이 결정이 됐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모든 자치구들이 아직 진행 중인 단계거든요.

□ ○○○ 위원

- 이해했습니다. 총 인상금액이 400만원, 4000만원 이정도 되면 저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년 동안 동결된 상태에서 40만원이라는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서울시 그 어떤 구를 봐도 크게 오버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오늘 인상 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공청회든 여론조사든 실시해서 그 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 위원장

- 그렇죠.

□ ○○○ 위원

-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0만원이 의정활동비에 대한 액수잖아요. 월정수당도 여기서 협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새마포기획팀장

- 아닙니다. 월정수당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2022년 9월에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제9대 마포구의회의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 위원

- 월정 수당에 대한 논의는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 새마포기획팀장

- 네, 맞습니다.

□ ○○○ 위원

- 의정활동비는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별로 위원회에서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 새마포기획팀장

-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없었으면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이유가 없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구성하여 의정활동비를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 ○○○ 위원

- 자료가 풍요롭다 보니까 조금 복잡했어요.

□ 새마포담당관

-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인 의정비는 연봉처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월정수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급, 월급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2022년 9월에 결정이 끝난 거고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보조활동을 위한 수당의 성격으로 20년 동안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개정되어 최대 40만원까지 인상을 해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 ○○○ 위원

- 다른 자치구는 상황이 어떤가요?

□ 새마포기획팀장

- 지금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 17개구가 1차 회의에서 일단 지급기준은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제 생각에는 의정활동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구의원들이 전업으로 하게 되면, 4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해도 부족하거든요. 결국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써가며 하게 되는 건데, 또 국민정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올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결정을 하고. 왜냐면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올려줬는데, 그런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또 반대 의견이나 비판 의견이 많으면 우리 의도와 달리 많이 낮아지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으로 올려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 위원

- 제가 조금 전에는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도 논의를 해야 하는 줄 알고 말씀 드렸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110만원 받고 있는 것을 150만원으로 40만원 올리게 되면, 자치구별 의정비 현황을 보니 마포구가 22등이에요. 그럼 맥시멈으로 올려도 순위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데서 다 40만원으로 올리면 저희는 이 순위는 변화가 없겠어요.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의정비가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저는 최대한으로 40만원 올리는데 동의하겠습니다.

□ ○○○ 위원

- 동의합니다.

□ ○○○ 위원

- 동의합니다.

□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지급 기준을 40만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전체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하는 위원들 있음)

## □ 위원장

-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급기준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건 3: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

## □ 위원장

- 세 번째 안건, 주민의견 수렴방식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새마포기획팀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새마포기획팀장

-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방법으로는 전문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나 공청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여론조사 먼저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마포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CATI 방식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CATI 방식이란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의 통제와 관리가 쉽고 조사 오류 방지 기능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ARS보다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 오늘 기준금액이 결정되면,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정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7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되면 심의회를 1회 더 개최해 설문문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공청회입니다. 최소 14일 이상 사전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공청회의 주재자가 되어 전 과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또 찬성 및 반대 발표자가 각각 발표 후 상호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 발제자 수당 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약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여론조사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 솔직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표본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어 성별, 연령, 지역별 적절한 표본선정이 필요하고, 공청회에 비해 예산이 다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공청회는 실시간 의견 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목소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시간과 장소에서 진행 되어 다양한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 소요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비해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 □ ○○○ 위원

- 저도 동의하는데요. 조금 전 구청장님께서도 여론조사와 공청회에 대한 채택 경험을 말씀 하셨는데, 여론조사 방식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전화로 수렴하다보니까 오늘 심의회에서 최고치 금액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도 공청회 쪽으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말씀해 주세요.

#### □ ○○○ 위원

- 저도 동의하는데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평소에도 전화를 받다 보면 충분한 정보가 잘 제공이 안 되거든요. 사실 답변도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 생각나는대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공청회 방식이 좀 더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활발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다들 주시는데요.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은 공청회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모두 예라고 답함)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의견수렴 방식은 공청회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이것으로 안건 논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그럼 새마포기획팀장님이 안건 의결 결과를 정리해주기 바랍니다.

□ 새마포기획팀장

-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건 1,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안건 2,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 기준은 월 150만 원으로 한다.  
안건 3,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공청회로 한다.
- 맞으시죠? 그럼 의결서 작성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성된 의결서에 위원 전원 서명)

□ 위원장

- 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